

# 2026년 제2회 구리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6년 제2회 구리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(일반행정)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6년 5월 18일

구리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

## 1 관련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5, 제27조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조의2, 제17조제1항, 제21조의3, 제21조의4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- 「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
## 2 임용분야 및 인원

- 채용개요

임용분야 (근무부서)	임용직급	인원	근무기간	담당업무
일반행정 (의회사무과)	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'라'급	1명	1년* (주35시간)	○ 일반행정(의정지원) 공통업무 수행 ○ 의원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 ○ 기타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

\*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**최초 임용일로부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,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.**

### 3 응시자격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#### 가. 공통자격요건

- 1) 응시결격사유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2) 연령 : 18세 이상
- 3) 지역 및 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공고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)
- 4) 국적 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(외국인,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)

#### 「지방공무원법」

**제31조(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
**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**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-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-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
  -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- 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-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
  - 1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  - 2.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  - 3.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  - 4.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-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-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,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
-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-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##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**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   - 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
    - 및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    -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    - 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    - 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    - 마. 삭제 <2022. 1. 4.>
    - 바. 삭제 <2022. 1. 4.>
    - 사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    - 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    - 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 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## 나. 직무분야 자격요건

임용예정 분야(직급)	자격요건
<b>일반행정</b> <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>	<p>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</li> <li>2.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</li> <li>3.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</li> </ol> <p>※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</p> <p>□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*, 연구소, 대학교, 법인,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'일반행정' 또는 '사무운영' 업무를 수행한 경력</p> <p>* 공공기관 : 경영정보공개시스템(alio.go.kr)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</p> <p>**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 상세히 명시(불분명한 경우 미인정)</p>

- 1) 경력의 계산은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관련분야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(일반임기제), 10년(시간선택제임기제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함.
- 2) 경력 요건의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 경력 합산 불가
  - (공무원경력) ○급 또는 ○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○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  - (민간경력) ○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/ 학사학위 취득 후(고등학교 졸업 후 ○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(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))
- 2) 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, 주당 근로시간, 관련분야 경력(담당업무 명확히 기재),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
- 3) 시간제근무 경력일 경우,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산정 후 인정
  - <예시> 4년간 주20시간 근무 : 2년으로 인정(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함)
- 4)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에 따라 임용 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

## 4

### 근무조건 및 보수

- (근무시간) 1일 7시간(09:00~17:00), 주 5일 근무(주 35시간)
  - ※ 근무환경에 따라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 가능
- (근무기간) 임용일로부터 1년
  - ※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최초 임용일로부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
- (보수)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4조에 따른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적용하되,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

구 분	상한액	하한액	주35시간 기준
라급/8급(상당)	62,096천원	44,296천원	38,759천원

- (수당)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  - ※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초과근무수당, 가족수당 등
- (복무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, 「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에 따름
- (복리후생) 복지포인트 지급, 공무원연금, 건강 · 고용보험 적용
  - ※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## 5

### 시험일정 및 방법

- 시험일정

모집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발표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2026. 5. 18. (월) ~5. 28. (목)	2026. 5. 26. (화) ~5. 28. (목)	2026. 6. 4. (목) 전 후 (홈페이지 게시)	2026. 6. 10. (수) ~ 6. 12. (금) 中 (홈페이지 게시)	2026. 6. 17. (수) 전 후 (홈페이지 게시)

- 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
- ※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
- ※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확인

- 제1차시험(서류전형) :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·경력 심사
  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서면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함.
  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음.
- 제2차시험(면접시험) :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  -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  -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·중·하의 개수 공개(단, 평가 요소별 상·중·하는 비공개대상)

[평정항목] (5개 항목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4조)

-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-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### ○ 최종합격자 결정

-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(상, 중, 하)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며,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.

#### [불합격 기준]

-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 로 평정 또는
-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“하” 로 평정
-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

#### [추가합격자 결정]

-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## 6

##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 5. 26.(화) ~ 5. 28.(목) 18:00까지 [3일간]
- 응시수수료 : (라급) 구리시 수입인지 5,000원

※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및 제출서류 안내(기준일 : 원서접수일 현재)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 계층 : 차상위계층 증명서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 : 한부모가족 증명서
4.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: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
5.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: 가족관계 증명서

- 접수방법 :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(익일특급) (퀵서비스/택배 접수 불가)

### 방문 접수

- ◇ 접수처 : 경기도 구리시의회 의회사무과 의회운영팀(1층)
- ◇ 찾아오는길 : (대중교통) 구리시청, 구리아트홀 정류장  
(자가용) 구리시청 내 주차장 ※ 최초 1시간 무료
- ◇ 접수시간 : 평일 09:00~18:00, 주말·공휴일 및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- ◇ 접수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함
- ◇ ‘구리시청 1층 민원실’에서 응시수수료(수입증지)납부 후 제출

### 등기우편 접수

- ◇ 주소 : (우)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(교문동) 구리시의회 인사담당자
- ◇ 원서접수 마감일 18:00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
- ◇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·동봉
  - ※ 현금 및 대한민국 ‘정부수입인지’ 사용 불가
  - ※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(16:30) 유의
  - ※ 우편봉투 겉면에 “2026년 제2회 구리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” 문구 표기
  - ※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(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)
  - ※ 우편접수 시 기재서류 미비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  - ※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사실을 반드시 담당자(☎031-550-2517)에게 전화로 고지하여야 함.

○ 제출서류

연번	서류항목	비고
1	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	제1호 서식
2	<p>응시원서 1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응시수수료) (다급) 구리시 수입인지 7,000원, (라급) 구리시 수입인지 5,000원</li> <li>- (방문접수) 구리시청 1층 민원실에서 수수료납부 후 응시원서에 인증기날인</li> <li>- (우편접수) '우체국 통상환증서' 구입 후 동봉</li> <li>* <u>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마감시간(16:30) 유의, 정부 수입인지 등 불가</u></li> </ul>	제2호 서식
3	<p>이력서 1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반드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</li> <li>- <u>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는 경력은 기재 금지</u></li> </ul>	제3호 서식
4	<p>자기소개서 1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식의 작성요령 참고, A4 용지 2매 내외 작성</li> </ul>	제4호 서식
5	<p>직무수행계획서 1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식의 작성요령 참고, A4 용지 2매 내외 작성</li> </ul>	제5호 서식
6	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(해당자만 작성, 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)	제6호 서식
7	<p>&lt;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자격증(해당 시) 사본 1부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국민연금, 고용·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</li> <li>※ 재직 사실만을 확인 가능한 단순 재직증명서는 경력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</li> <li>※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</li> </ul> <p>○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주당 근무시간,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발급확인자 성명과 연락처, 서명(인)이 있어야 함</li> <li>-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수기로 확인받아 제출하거나 &lt;서식 제7호&gt;경력증명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</li> </ul> <p>○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, 비정규직, 비상근 경력인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,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관과 시간이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, 인사담당자 자필확인이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(미제출 시 경력 미인정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(예시 :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시 2년 인정)</li> </ul> <p>○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, 법인 등기부등본, 소득금액증명 등 추가 증빙자료 제출</p>	제7호 서식

연번	서류항목	비고
8	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본 각 1부 (경력·재직증명서 제출 내용 확인 必) 가.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) - 국민건강보험공단( <a href="http://www.nhis.or.kr">http://www.nhis.or.kr</a> )에서 발급 또는 1577-1000번에서 발급 나.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	-
9	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1부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- 고교 이하 졸업자의 경우 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 제출	-
10	주민등록 초본(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,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) 1부	-
11	그밖에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(해당 시)	-
12	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1부	제8호 서식
13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	제9호 서식
14	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	제10호 서식

○ 유의사항

-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,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
-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(졸업증명서, 학력·경력증명서, 어학능력성적표 등)의 경우 반드시 공증 번역된 한글 번역본 제출
- 제출된 서류는 상기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,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※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, 양면인쇄 금지

## 7 응시자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(발급번호, 발급일자, 발급담당자 등의 위조·변조를 포함)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 통지 후라도

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 해드립니다.
-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「공무원연금법」이나 「군인연금법」, 「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」을 적용받는 공무원·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. (「공무원연금법」 제50조 제1항)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**(재공고)**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 재공고할 예정이며, 공고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 전에 구리시의회 홈페이지(<http://www.gcc.or.kr>) 및 나라일터(<https://www.gojobs.go.kr>)에 공고합니다.(재공고시 기존 응시원서 제출자는 응시번호 그대로 반영)
- 그 밖에 채용관련 문의 : 구리시의회 의회사무과 의회운영팀(031-550-2517)